



I. 사업장 정보

① 조사표 번호

업종	② 근로자수	_____명	* 업종이 건설업인 경우 해당 (④~⑦)	⑤ 공사종류		
③ 주요생산품· 공사 및 서비스	④ 사업장 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도급(원청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 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(하청)		⑥ 공정률(%)		⑦ 총공사금액(백만원)

II. 재해자 정보

① 직업/직위		재해발생 시점	<input type="checkbox"/> 작업 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정규작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연장근무 <input type="checkbox"/> 식사휴식	⑤ 상해종류	
평소 업무			<input type="checkbox"/> 출퇴근 <input type="checkbox"/> 휴일근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⑥ 상해부위	
② 고용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시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시간제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④ 근로 손실일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장해 (등급 : _____급)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상(결근 : _____일, 통원치료 등 : _____일)	⑦ 동종업무 근속기간	과거사업장 : _____년 _____월 _____일
③ 근무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정상 <input type="checkbox"/> 2교대 <input type="checkbox"/> 3교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* 현 근무상태 : <input type="checkbox"/> 재직 <input type="checkbox"/> 퇴사		현 재직 사업장 : _____년 _____월 _____일

III. 재해발생 정보

인적피해	부상_____명 사망_____명	① 재해발생장소/부서	/		
② 재해원인이 된 작업공정·내용					
③ 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·내용					
④ 개인보호장비	<input type="checkbox"/> 착용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착용비대상 【 <input type="checkbox"/> 착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착용 (장비: _____) 】				
⑤ 안전·방호설비	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비대상 【 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설치 (장비: _____) 】				
⑥ 재해유발 기계, 물체(물질)	( _____ )			⑧ 가해물	
⑦ 재해발생형태				⑨ 작업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 <input type="checkbox"/> 복수_____명
재해발생형태별 추가 정보	추락	높이( _____ )m 추락장소( _____ )	화재·폭발		
	감전	전압( _____ )V 접촉부위( _____ )	점화원		

IV. 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십시오.

사고와 직접 연관이 되었던 「작업공정의 운전 또는 작업상황」과 사고 발생시점의 「작업자(또는 재해자)의 움직임, 행위」에 대하여 기재하고, 사고가 「어떤 형태<취급설비, 공구, 원재료와 작업자(또는 재해자)의 상관관계>」로 발생되었는지 단계별로 그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입	
재해를 유발한 설비·기계, 구조물, 작업공정 및 환경요인 등에 잠재된 불안전 요소는?(물적요인)	
재해를 초래하게 된 작업자 자신 또는 동료의 행동에 대한 불안전 요소는?(인적요인)	

## 조사표 기입 및 작성 예시(건설업)

☞ 본 예시는 건설업종을 예를 들어 작성한 것으로서 각 항목의 작성요령을 꼭 읽어보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※ 제조업, 기타산업은 뒷면예시 참조)

### I. 사업장 정보

① 조사표 번호	2004 - 2* - ****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업종	사업용 건물 건설업	② 근로자수	150 명	※ 업종이 건설업인 경우 해당 (⑤~⑦)	⑤ 공사종류	○○공장 증축공사
③ 주요생산품·공사 및 서비스	공장, 아파트	④ 사업장 형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도급(원청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 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(하청)		⑥ 공정율(%)	75%
					⑦ 총공사금액(백만원)	5,700 백만원

- ① 조사표번호 : 『업무상사고 조사표』 표지의 우측 중간의 조사표번호 「2004-2\*-\*\*\*\*」 을 그대로 기입
- ② 근로자수 : 상용, 임시, 일용근로자 등 급여를 받는 월평균 근로자수를 기재하되, 재해발생연도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기재
- ③ 주요 생산품공사 및 서비스 : 재해발생 연도의 매출액(공사 실적액)이 높은 순서대로 최대 4종까지 공사종류를 기재  
 ※ 수급(하청)업체의 경우도 도급(원청)업체 공사 실적 기재
- ④ 사업장형태 : 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장(급여를 지급 받는)을 표시하되, 수급사업장은 도급사업장내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임
- ⑤ 공사종류 : 재해당시 진행중인 공사의 명칭을 기재하되, 수급(하청)업체의 개별공사가 아닌 도급(원청)업체의 공사종류를 기입  
 【 예 : 아파트, 상가, 공장건물, 플랜트(석유화학, 제조시설 등), 교량, 지하철, 도로 등 】
- ⑥ 공정율 : 재해발생 시점의 단위공정별 공사 진척도가 아닌 해당 건설현장의 전체 공사 진척도를 기재
- ⑦ 공사금액 : 발주처로부터 도급(원청)업체가 수주받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재 (※ 수급(하청)업체별 공사금액이 아님)

### II. 재해자 정보

① 직업/직무	건축도장원 / 반장	재해발생 시점	<input type="checkbox"/> 작업 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규작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연장근무 <input type="checkbox"/> 식사휴식 <input type="checkbox"/> 출퇴근 <input type="checkbox"/> 휴일근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⑤ 상해종류	공적
평소 업무	도장작업	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장해(등급 : _____급)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상(결근 : __일, 통원치료 등 : __일)	⑥ 상해부위	머리
② 고용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시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일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시간제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④ 근로손실일	※ 현 근무상태 : <input type="checkbox"/> 재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퇴사	⑦ 동종업무 근속기간	과거사업장 : 15년 8월 15일 현 재직 사업장 : 1년 6월 9일
③ 근무형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상 <input type="checkbox"/> 2교대 <input type="checkbox"/> 3교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		

- ① 직업/직무 : 평소 수행하는 정규 직업과 직책을 기재하되 사무직, 생산직 등 막연하게 작성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위주로 기재함  
 【 예 : 금속모형제조원, 육상화물하역원, 콘크리트완성원, 한식조리사, 고속버스운전사, 회계사무원, 주차장관리원 ... / 과장, 반장, 조장, ... 】
- ② 고용형태 : ㉠ 상용 -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  
 ㉡ 임시 -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(계절제 등 단기 계약직을 말함)  
 ㉢ 일용 -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 
 ㉣ 시간제 -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일일 정상근로시간 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자  
 ㉤ 기타 - 무급가족종사자, 사업주, 자영업자 등
- ③ 근무형태 : ㉠ 정상 -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18시 전후에 퇴근하는 형태  
 ㉡ 2교대, 3교대 - 동일작업이 2개조, 3개조에 의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형태이나 1개월 이상을 주기로 순환되는 형태는 제외  
 ㉢ 기타 - 고정적인 야간업무(1개월 이상인 경우) 등
- ④ 근로손실일 : - 사망자, 장애자의 경우 구체적 근로손실일수를 기재하지 않고 사망, 장애등급을 기재함  
 - 부상자는 결근일수(재해당일을 제외한 출근을 하지 못한 일수로 공휴일도 포함)와 통원치료 등의 일수를 각각 기재  
 ※ 통원치료 등 : 회사에 정상 출근하였으나 일과 중 통원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수 (업무량, 업무시간 감소, 작업전환 등 포함)  
 ※ 조사당일까지 사업장에 복귀하지 못하였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조사당일 또는 퇴사 이후의 요양 또는 치료일수를 추산하여 합산함(의사진단서의 진단일수로 가능)  
 【 예 : 오늘 조사기준일로 사고부상자의 재해일자는 2003.3.3일이며 3월10일까지 결근하였고(㉠) 11일~14일까지는 통원치료를(㉡) 했을 경우 근로손실일은 ⇒ 7일(㉠) + 4일(㉡) = 11일이 됨 】
- ⑤ 상해종류 :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신체적 특성-상해형태 【 예 : 절단, 뼈 부러짐, 찰림, 창상, 타박상, 찰과상, 화상, 호흡기소화기 손상 등 】
- ⑥ 상해부위 : 부상 또는 질병이 나타난 신체부위로 진단 받은 신체부위  
 【 예 : 머리, 눈, 얼굴, 몸통, 허리, 손가락, 전신 등(만약 중대한 상해부위가 2부위 이상이면 모두 기록) 】
- ⑦ 동종업무근속기간 : 과거 사업장과 현 재직 사업장의 근무경력에 각각 기재하되, 재해발생당시 회사에서 근무중인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경력에 한함.

III. 재해발생 정보

인적피해	부상 <u>    </u> 명 사망 <u>1</u> 명	①재해발생장소/부서	공장 증축공사현장 /	
②재해원인이 된 작업공정·내용	손수레 운반 작업			
③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·내용	도장 작업			
④개인보호장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착용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착용비대상    【 <input type="checkbox"/> 착용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미착용 (장비: 안전모 )】			
⑤안전·방호설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설치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비대상    【 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미설치 (장비: 안전난간 )】			
⑥재해유발 기계, 물체(물질)	중량물이 적재된 간이 손수레( )	⑧가해물	바닥	
⑦재해발생형태	추락(떨어짐)		⑨작업형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단독 <input type="checkbox"/> 복수 <u>    </u> 명
재해발생형태별 추가 정보	추락	높이( <u>1.7</u> )m 추락장소( 이동식 튜브계 )	화재·폭발	
	감전	전압( )V 접촉부위( )	점화원	

① 재해발생장소/부서 : 사고가 최초로 발생한 지점으로 장소가 생산동, 사무실인 경우는 부서명도 기재  
 ※ 다른 부서의 작업상황으로 인한 재해발생은 재해자의 작업중이던 장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② 재해원인이 된 작업공정·내용 : 사고발생에 근본적 원인이 된 작업공정과 그 작업공정 중에 사고를 유발한 작업자의 수행내용 또는 행위를 기술  
 ※ 재해자 본인의 작업공정 또는 내용이 아닌 동료 작업자의 작업공정·내용 일 수도 있음  
 【 작업공정·내용 예 : ○○프레스를 이용한 성형공정 중 금형교체 작업, 컨베이어를 이용한 화물 운반공정 중 차량에 상역작업, 관 배설공사 중 용접작업, 비계설치공정 중 볼트 체결작업, 오토바이로 음식배달 작업, 아파트 순찰업무 등 】

③ 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·내용 : 사고발생 당시 재해자가 수행중인 작업공정과 작업수행내용 기술  
 ※ 재해원인이 된 작업공정·내용과 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·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한번만 기재

④ 개인보호장비 : 당해 재해와 관련하여 작업수행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재해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더라면 「착용대상」에 기재하고, 재해 피해 경감이 곤란하면 「착용비대상」에 기재  
 ※ 착용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착용 또는 미착용 중 하나에 반드시 표시하고 개인보호장비명 기재  
 【 착용대상 예 :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중 낙하물에 충돌하여 머리 상해 입은 경우 】  
 【 착용비대상 예 : 작업현장에서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나, 50m이상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재해를 입은 경우 】

⑤ 안전·방호설비 : 당해 재해와 관련하여 작업수행시 안전·방호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재해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더라면 「설치대상」에 기재하고, 재해 피해 경감이 곤란하면 「설치비대상」에 기재  
 ※ 설치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 또는 미설치 중 하나에 반드시 표시하고 안전·방호설비명 기재  
 【 설치대상 예 : 프레스작업 중 광전자식 안전방호장치 기능을 중지한 상태에서 성형 작업을 하다 프레스기에 끼이는 재해발생 】  
 【 설치비대상 예 : 제품을 차량에 적재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재해 또는 공장에서 사무실로 이동 중 걸빙된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재해 】

⑥ 재해유발 기계, 물체(물질) : 사고 발생을 일으킨 직접원인이 된 설비, 시설 등 즉, 기인물을 말함  
 ※ 사고발생의 직접원인으로 재해자가 취급하던 설비가 아닌 주변설비 또는 동료 작업자의 취급 설비도 될 수 있음  
 【 예 : 프레스, 호이스트, 밸트컨베이어, 분쇄기, 로울러기, 수공구, 바닥, 지붕, 산화에틸렌, 신나, 사람, 개 등 】

⑦ 재해발생형태 : 재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재해유발 기계 또는 물체(물질)와의 관계된 발생현상  
 【 예 : 떨어짐, 미끄러짐, 설비에 끼임, 회전부위에 감김, 날아오는 물건에 부딪힘, 적재를 무너짐, 화재, 감전, 고온저온에 접촉, 유해위험물 접촉 등 】

⑧ 가해물 :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기계, 물체 또는 물질  
 【 예 : 목재가공용 동근톱으로 각재를 절단하던 중 절단편이 비래되어 얼굴에 상해를 입은 경우, 기인물은 목재가공용 동근톱이고 가해물은 각재 절단편임 】

⑨ 작업형태 : 동일 작업지역·작업공정에 투입한 인원과 작업형태가 아닌, 「동일 작업수행을 목적으로」 투입한 인원과 작업방식을 말함  
 【 예 : 복수 2인 - 2인1조로 승강기를 이용 운반작업시 1명은 1층에서 화물을 적재, 1명은 5층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】

IV. 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십시오.

사고와 직접 연관이 되었던 「작업공정의 운전 또는 작업상황」과 사고 발생시점의 「작업자(또는 재해자)의 움직임, 행위」에 대하여 기재하고, 사고가 「어떤 형태<취급설비, 공구, 원재료와 작업자(또는 재해자)의 상관관계>」로 발생되었는지 단계별로 그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입	
<p>공장동 증축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이동식 튜브계의 뺨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층 내부 벽체 도장작업 중 잔여자재를 운반하던 동료작업자의 간이손수레한 충돌하면서 지하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</p>	
재해를 유발한 설비·기계, 구조물, 작업공정 및 환경요인 등에 잠재된 불안전 요소는?(물적요인)	추락방호 시설 미설치(안전난간)
재해를 초래하게 된 작업자 자신 또는 동료의 행동에 대한 불안전 요소는?(인적요인)	이동식 손수레의 오조작

## 조사표 기입 및 작성 예시(제조업 등 기타산업)

☞ 본 예시는 제조업종을 예를 들어 작성한 것으로서 건설업 이외 모든 업종에서 참고하시되, 각 항목의 작성요령을 꼭 읽어보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\* 건설업은 뒷면예시 참조)

### I. 사업장 정보

① 조사표 번호	2004 - 2* - ****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업종	플라스틱제품 제조업	② 근로자수	60 명	* 업종이 건설업인 경우 해당 (⑤~⑦)	⑤ 공사종류	
③ 주요생산품· 공사 및 서비스	플라스틱 용기, 뚜껑 (병, 통, 야개 등)	④ 사업장 형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도급(원청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 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(하청)		⑥ 공정율(%)	
					⑦ 총공사금액(백만원)	백만원

① 조사표번호 : 「업무상사고 조사표」 표지의 우측 중간의 조사표번호 「2004-2\*-\*\*\*\*」 을 그대로 기입

② 근로자수 : 상용, 임시, 일용근로자 등 급여를 받는 월평균 근로자수를 기재하되, 재해발생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기재

③ 주요 생산품공사 및 서비스 : 한 개 이상 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 할 경우,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최대 4종까지의 생산품 또는 서비스 업태를 기재

④ 사업장형태 : 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장(급여를 지급 받는)을 표시하되, 수급사업장은 도급사업장내에서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임

⑤ 공사종류 : 제조업 등 기타 산업분야는 미기재 (\* 건설업인 경우만 기재)

⑥ 공정율 : 제조업 등 기타 산업분야는 미기재 (\* 건설업인 경우만 기재)

⑦ 공사금액 : 제조업 등 기타 산업분야는 미기재 (\* 건설업인 경우만 기재)

### II. 재해자 정보

① 직업/직위	사측기조작원/ 조장	재해발생 시점	<input type="checkbox"/> 작업 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규작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연장근무 <input type="checkbox"/> 식사휴식	⑤ 상해종류	전기화상
평소 업무	사측성형기조작(플라스틱용기)		<input type="checkbox"/> 출퇴근 <input type="checkbox"/> 휴일근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⑥ 상해부위	손
② 고용형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상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시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시간제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④ 근로 손실일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장해(등급 : _____급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부상(결근 : 35일, 통원치료 등 : 20일)	⑦ 동종업무 근속기간	과거사업장 : 2년 1월 15일
③ 근무형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상 <input type="checkbox"/> 2교대 <input type="checkbox"/> 3교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* 현 근무상태 :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재직 <input type="checkbox"/> 퇴사		현 재직 사업장 : 4년 3월 9일

① 직업/직위 : 평소 수행하는 정규 직업과 직책을 기재하되 사무직, 생산직 등 막연하게 작성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위주로 기재함  
【 예 : 금속모형제조원, 육상화물하역원, 콘크리트완성원, 한식조리사, 고속버스운전자, 회계사무원, 주차장관리원 ... / 과장, 반장, 조장, ... 】

② 고용형태 : ㉠ 상용 -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  
㉡ 임시 -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(계절제 등 단기 계약직을 말함)  
㉢ 일용 -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 
㉣ 시간제 -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일일 정상근로시간 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자  
㉤ 기타 - 무급가족종사자, 사업주, 자영업자 등

③ 근무형태 : ㉠ 정상 -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18시 전후에 퇴근하는 형태  
㉡ 2교대, 3교대 - 동일작업이 2개조, 3개조에 의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형태이나 1개월 이상을 주기로 순환되는 형태는 제외  
㉢ 기타 - 고정적인 야간업무(1개월 이상인 경우) 등

④ 근로손실일 : - 사망자, 장애자의 경우 구체적 근로손실일수를 기재하지 않고 사망, 장애등급을 기재함  
- 부상자는 결근일수(재해당일을 제외한 출근을 하지 못한 일수로 공휴일도 포함)와 통원치료 등의 일수를 각각 기재  
\* 통원치료 등 : 회사에 정상 출근하였으나 일과 중 통원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수 (업무량, 업무시간 감소, 작업전환 등 포함)  
\* 조사당일까지 사업장에 복귀하지 못하였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조사당일 또는 퇴사 이후의 요양 또는 치료일수를 추산하여 합산함(의사진단서의 진단일수로 가능)

【 예 : 오늘 조사기준일로 사고부상자의 재해일자는 2003.3.3일이며 3월10일까지 결근하였고(㉠) 11일~14일까지는 통원치료를(㉡) 했을 경우 근로손실일은 ⇒ 7일(㉠) + 4일(㉡) = 11일이 됨 】

⑤ 상해종류 :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신체적 특성-상해형태 【 예 : 절단, 뼈 부러짐, 찰림, 창상, 타박상, 찰과상, 화상, 호흡기소화기 손상 등 】

⑥ 상해부위 : 부상 또는 질병이 나타난 신체부위로 진단 받은 신체부위  
【 예 : 머리, 눈, 얼굴, 몸통, 허리, 손가락, 전신 등(만약 중대한 상해부위가 2부위 이상이면 모두 기록) 】

⑦ 동종업무근속기간 : 과거 사업장과 현 재직 사업장의 근무경력력을 각각 기재하되, 재해발생당시 회사에서 근무중인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경력력에 한함.

